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67 발의연월일: 2022. 5. 12.

발 의 자:김병욱·김교흥·김병기

서영석 · 오영환 · 유동수

이병훈 · 이용빈 · 이용선

정성호 · 정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요구불예금으로 장기대출을 주로 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단기자금 운용이 필수적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에 따라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에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해석이 모호하고, 「한국은행법」 등 다른 법령과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일부 신용공여

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 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법인"을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 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치는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
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위)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	
항에도 불구하고 <u>법인</u> 에 대한	<u>법인(「중소기업</u>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u>다만,</u>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	소기업은 제외한다)
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	
용공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
	<u>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u>
	<u>loa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
	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치는
	<u>할 수 있다.</u>